제101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어구보증금의 부과 대상(신설) ㅇ 어구·부표보증금 대상 어구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,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·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,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,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로 정함 ▶수산업법 제81조 ▶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2	비중요
2	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어구보증금액 설정(신설) ㅇ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어구·부표보증금 대상 어구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,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,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,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·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로 하고 어구보증금액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16]과 같이 정함 [별표 16] 수산업법 시행규칙(어구보증금액(제85조의2 관련)) ㅇ 통발 1. 스프링이 설치된 장구형 통발(직경 40cm이하이면서, 높이가 12cm 이하인 소형 원통형 통발 및 스프링이 설치된 원통형 통발) : 1,000원/개 2. 원형 통발 : 2,000원/개 3. 원뿔대형(반구형) 통발 : 2,000원/개 4. 사각형 통발 : 3,000원/개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5. 원뿔대형(대게류·붉은대게류) 통발 : 3,000원/개 6. 장어통발 : (통발) 300원/개, (깔때기) 3,000원/100개 ㅇ 자망 1. 그물 : 2,000원/폭 ㅇ 부표 1. 부피가 2L ~ 25L 미만 : 300원/개 2. 부피가 25L 이상 ~ 50L 미만 : 1,000원/개 3. 부피가 50L 이상 ~ 100L 미만 : 3,000원/개 4. 부피가 100L 이상 ~ 500L 미만 : 6,000원/개 5. 부피가 500L 이상 : 30,000원/개 ▶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3	
3	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개정안 (지식재산처)	1.실습과제의 보완 제출기한 규정(신설) ㅇ 집합교육에서 부여한 실습과제＊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제출된 실습과제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7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 ＊ 특허·상표·디자인에 대한 명세서·의견서·보정서 및 심판·소송별 서류 작성 실습 ▶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의2	비중요
		2.집합교육 불인정 사유 추가(강화) ㅇ ① 실무수습(집합교육)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수업지시의 주체로서 ‘집합교육 담당자’를 추가하고, ② 실무수습 교육 중 부여된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, 불성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한 집합교육 불인정 근거 마련 ▶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19조	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결강 후 교육 보충시 출석 인정시간 축소(강화) o 결강을 승인받은 집합교육 대상자가 과제물 또는 보고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결강한 강의에 준하는 교육 내용을 보충한 경우 최대 24시간까지만 결강 시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▶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2조	중요
		4.현장연수 지도인력 결격사유 추가(신설) o 현장연수 지도인력의 결격사유(휴업 또는 폐업,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의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)를 명시 ▶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4조	비중요
		5.현장연수 기관 불인정 사유 추가(신설) o 현장연수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연수를 운영했거나 허위로 현장연수 이수 실적을 인정한 경우, 현장연수 업무 수행을 중지, 불인정할 수 있음 ▶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3조	비중요
		6.현장연수 신청 시정기한 규정(신설) o 부적격 현장연수기관에서 현장연수를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연수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▶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34조	중요
4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 · 판매(신설) o 자동차제작 · 판매자등은 자동차 판매 후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추출장비가 시중에 유통 ·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정관 변경인가 사항 추가(신설) ㅇ 그간 리츠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관련사항만 변경인가 대상이었으나, 리츠 정관변경 사항 중 투자자보호 관련성이 높은 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도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▶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▶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의2	비중요
		2.최대 출자자 등 요건 추가 제한(강화) ㅇ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, 명목회사 등인 경우에는 배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실체회사가 주요주주 적격심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 ▶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▶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	비중요
6	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경고,주의 대상 추가(강화) ㅇ 현 부동산투자회사의 경고 · 주의대상을 부동산투자회사등(자산관리회사,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 포함)으로 확대 ▶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	비중요
7	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사망사고 발생 항공사 운수권 배분 배제(신설) ㅇ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 사고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서 배제하는 규정 신설 ▶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	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8	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본인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범위(강화) ㅇ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를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능력을 보유한 개인정보 처리자와 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에 대한 정보 전체로 범위 확대 ▶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, 제42조의4	중요
		2.전문기관 등을 통한 본인전송요구 대리(강화) ㅇ 전문기관 등을 통한 본인전송요구 대리 행사의 절차 및 전문기관의 본인전송정보 관리·분석 업무 추가 등 규정 ▶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5,제42조의9	중요
		3.개인정보 전송 방법(강화) ㅇ 본인전송요구 대리 행사시 안전성·신뢰성이 보장되는 전송방식 규정 ▶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	중요
9	군인연금법 개정안 (국방부)	1.별정우체국연금수급자에 대한 퇴역유족연금 감액(신설) ㅇ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퇴역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2분의 1을 감액 지급 ▶군인연금법 제20조	비중요
10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질병관리청)	1.이상반응 신고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유형 추가(신설) ㅇ 이상반응 신고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 유형 추가 ▶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전기안전관리법 및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(시행령)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책임보험(신설) ㅇ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시설*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규정 * 법률에서 신고·변경신고를 대상을 제외한 종교시설, 창고시설, 야영장 시설 등 13종 건축물 시설 ▶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	비중요
		2.(시행령)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대상(신설) ㅇ「건축법 시행령」상 용도별 건축물* 중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(지자체) 대상으로 규정 * 종교시설, 창고시설, 야영장시설 등 13종 건축물 시설(법률에서 정하는 신고·변경신고 대상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) ㅇ 전기차 충전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규정 *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·운영하는 충전사업자의 변경 ▶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	비중요
		3.(시행규칙)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대상(신설) ㅇ「건축법 시행령」상 용도별 건축물* 중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(지자체) 대상으로 규정 * 종교시설, 창고시설, 야영장시설 등 13종 건축물 시설(법률에서 정하는 신고·변경신고 대상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) ㅇ 전기차 충전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규정 * 전기차 충전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·운영하는 충전사업자의 변경 ▶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	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2	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· 표시기준 개정안 (환경부)	1.다회 사용 습기제거제 안전 사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보완(신설) ㅇ 보충형 제품(다회 용기) 제조 · 수입을 위해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확인에 따른 고시 해당제품 표시면에 사용상 주의사항(전용용기 사용 등) 문구 표시 ▶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· 표시기준 제6조	비중요
		2.연소형 방향제 및 향초 안전 사용을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신설(신설) ㅇ 연소형 방향제 및 초(방향용) 제품 대상 표시기준 강화 – 해당 제품의 사용 중, 사용 후, 보관 시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사용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▶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· 표시기준 제6조	비중요